■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 외 예금거 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,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제5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은 재예치일에 예금주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재예치되며, 약정 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..
- ② 이 예금의 **만기일을 재예치일로** 하고 **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** 일을 재예치일로 하며 **만기일이 없는경우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**로 합니다
- ③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.
- ② 이 예금은 예금일 및 매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 단,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이율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8조 중도해지이율

- 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중도해지 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전항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약정한 이율을 지급일 전날까지 적용합니다. 단,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①항을 적용합니다.
 - 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 발생하는 경우
 - 2.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2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3) 가입자가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 - 4) 가입자가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5) 그 밖에 천재.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 - 3.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
 - 2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3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4) 수탁자의 사임
 - 4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하는 경우
 - 5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 사업자내의 제도 전환인 경우
 - 6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인출 사유 발생시
 - 7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연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

제9조 만기후이율

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청구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

니다.

제10조 분할해지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위 '1항'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.
- ③ 고객이 이 예금의 분할해지를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(재예치일)로부터 분할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(재예치일)당시 고시한 분할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분할해지금액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11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수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